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장관 귀하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명지학원(명지대학교)의 201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81423-232: 2003. 2.25.)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학교법인 명지학원 (명지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수익사업회계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-	-	-	지적사항 없음.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-	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	-	수익사업회계에 대한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
3. 학교 관련	-	-	1	감사 지적사항 참조
4. 부속병원 관련	-	-	-	해당사항 없음.
계	-	-	1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명지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 2. 명지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0년 5월 20 일

학교법인 명지학원
 감 사 유 윤 산 (인)
 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472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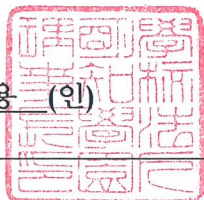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2020년 5월 20일

학교법인 명지학원

이 사 장 현 세 용 (인)



피감사 기관장

2020년 5월 20일

명지대학교

총 장 유 병 권 (인)



(별지 제1의1호 서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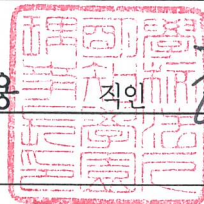
학교법인 명지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지적사항 없음.	
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현 세 용 직인



(법인 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

(별지 제1의2호 서식)

명지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<p>○ 불용물품 이사회 승인 요청 일정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결산 이사회 전에 불용액에 대한 이사회 승인 및 결산서 반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불용물품에 대한 이사회 승인 요청과 결산서에 대한 의결이 결산 이사회에서 함께 처리되는 모순이 있음.	<p>○ 법인의 이사회 일정을 감안하여 결산 이사회 전에 불용물품에 대한 처리 및 불용액을 결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, 결산 이사회에서 불용액이 반영된 결산서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겠음.</p>

피감사기관장

명지대학교 총장 유 병 진



(교비회계)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2019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,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※ 지적 사항 없음.

2020. 5. 20 .

학교법인 명지학원

감 사 유 훈 산



감 사 _____ 인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명지학원 재정부장

성 명 정 스텔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명지대학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명지대학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※ 지적 사항 없음.

2020. 5. 20 .

학교법인 명지학원

감 사 유문산 인

감 사 _____ 인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사무지원처장

성 명 김영민 인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명지전문대학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명지전문대학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※ 지적 사항 없음.

2020. 5. 20.

학교법인 명지학원

감 사 유은산 인

감 사 _____ 인

피감사자(임회인)

직 명 사무처장

성 명 김경원 인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교비회계)

(별지 제1의1호 서식)

명지전문대학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<p>○ 불용물품 이사회 승인 요청 일정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결산 이사회 전에 불용액에 대한 이사회 승인 및 결산서 반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 불용물품에 대한 이사회 승인 요청과 결산서에 대한 의결이 결산 이사회에서 함께 처리되는 모순이 있음.	<p>○ 법인의 이사회 일정을 감안하여 결산 이사회 전에 불용물품에 대한 처리 및 불용액을 결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, 결산 이사회에서 불용액이 반영된 결산서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겠음.</p>

피감사기관장

명지전문대학 총장 서 정 선

직인

(사인)



(교비회계)